

광주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03.11. 24

나. 회부일자 : 2003.11. 2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3. 11. 25)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 계 중 의원)

3. 제안이유

서구민상은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개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부여하는 상으로써 서구민상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부문별 최종 1인을 선정하여 수상후보자로 결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상자 후보를 구청장이 결정한다.

5. 검토의견(전문위원 신 덕 찬)

서구민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예술, 체육 등 창조적 전승개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하고 구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자에게 부여하는 상으로써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구청장이 수상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된 수상후보자를 구청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수상자 결정) ----- 수상후보 자중에서-----.</p>	<p>제6조(수상자 결정) ----- 수상후보자를 -----.</p>